

## 임실군의회 공고 2024 - 1호

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4. 1. 16.

임실군의회의장



#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개정이유

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2024.1.18.)에 따라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전라북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(안 제6조)

- 전라북도→ 전북특별자치도
- 전라북도의회→ 전북특별자치도의회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부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4. 1.16. ~ 2024. 1. 22. (6일간)

라. 불 입 :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규대조표,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임실군 조례 제 호

##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**전라북도**”를 “**전북특별자치도**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**전라북도의회**”를 “**전북특별자치도의회**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<br>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<br>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<br>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<u>전라북도</u><br>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<br>국회와 <u>전라북도의회</u> 가 직접 감사<br>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. | 제6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)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전북특</u><br><u>별자치도</u> -----.<br>----- <u>전북특별자치도의회</u> -----<br>-----. |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(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## 1. 재정수반 요인

해당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- ① 군수 또는 의원·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  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
- ② 「지방자치법」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

## 4. 작성자 :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원